

개호 보험 제도에 관하여

2024년 4월판

오 사 카 부

목 차	
1. 개호 보험 제도 주요 개정점	2
2. 개호 보험 제도의 구조	3
(1) 개호 보험 제도 전체도	3
(2) 개호 보험의 재원 구성	3
(3) 개호 서비스 등의 이용 절차	4
3. 개호 보험으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	6
(1) 자택 개호 지원·개호 예방 지원	6
(2) 자택 서비스 등	7
(3) 시설 서비스	8
(4) 지역 밀착형 서비스	9
4. 지역 지원사업	10
(1) 개호 예방·일상생활 지원 종합 사업	10
(2) 포괄적 지원 사업	11
(3) 임의 사업	13
5. 개호 서비스 정보의 공표에 대하여	13
6. 개호 보험료	13
(1) 제 1 호 피보험자(65 세 이상) 분의 보험료	14
(2) 제 2 호 피보험자(40 세부터 65 세 미만) 인 분의 보험료	15
(3) 보험료 감면	15
(4) 체납 시 조치	15
7. 이용자 부담	16
(1) 이용자 부담	16
(2) 자택 서비스 이용자 부담	17
(3) 시설 서비스의 이용자 부담	17
(4) 사회 복지법인 등에 의한 이용자 부담 경감	19
(5) 고액 의료 합산 개호 (개호예방)서비스비	19
8. 고령자의 권리 옹호를 위해서	20
(1) 권리옹호 상담사업	20
(2) 일상생활 자립 지원 사업	20
(3) 성년 후견 제도	21
(4) 고령자 학대 방지	21
9. 심사청구	21
10. 장애인의 개호 보험 이용에 대하여	21
11. 기타 고령자 복지 서비스 등	22
(1) 자택에서의 서비스	22
(2) 시설 서비스	22
(3) 고령자 대상 주택	22
12. 상담 창구·정보 안내	23

1. 개호 보험 제도 주요 개정점

【2024년 4월부터】

●개호 보험료가 개정되었습니다.

2024년도부터 2026년도의 개호 보험료가 결정되었습니다.

개호 보험의 재원 비율은 제 1 호 피보험자(65 세 이상인 분)는 약 23%, 제 2 호 피보험자(40 세 이상 65 세 미만인 분)는 27%입니다.

●개호 보수가 개정되었습니다.

개호 보험 서비스 개호 보수가 개정되었습니다.

●제 1 호 피보험자의 보험료에 관한 소득 단계가 다단계화되었습니다.

개호 보험료를 결정할 때의 표준적인 소득 단계가 9 단계에서 13 단계로 다단계화되어, 소득이 높은 분의 표준 승률이 인상되는 동시에, 소득이 낮은 분의 표준 승률이 인하되었습니다.(14 페이지 참조)

●복지 용구 중 일부에 대해 렌탈, 구매 선택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종전에 복지 용구 대여(렌탈) 대상 종목으로서 취급했던 고정용 슬로프, 보행기, 보행 보조 지팡이는, 앞으로 렌탈 또는 구매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7 페이지 참조)

【2024년 8월부터】

●개호 보험 시설의 기준 비용 금액과 저소득자의 부담 한도액이 변경됩니다.

개호 보험 시설 등을 이용할 때의 거주비의 기준 비용 금액이 인상됩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자 대상 이용자 부담의 경감 제도에서는 거주비의 부담 한도액이 일부 인상됩니다.(17~19 페이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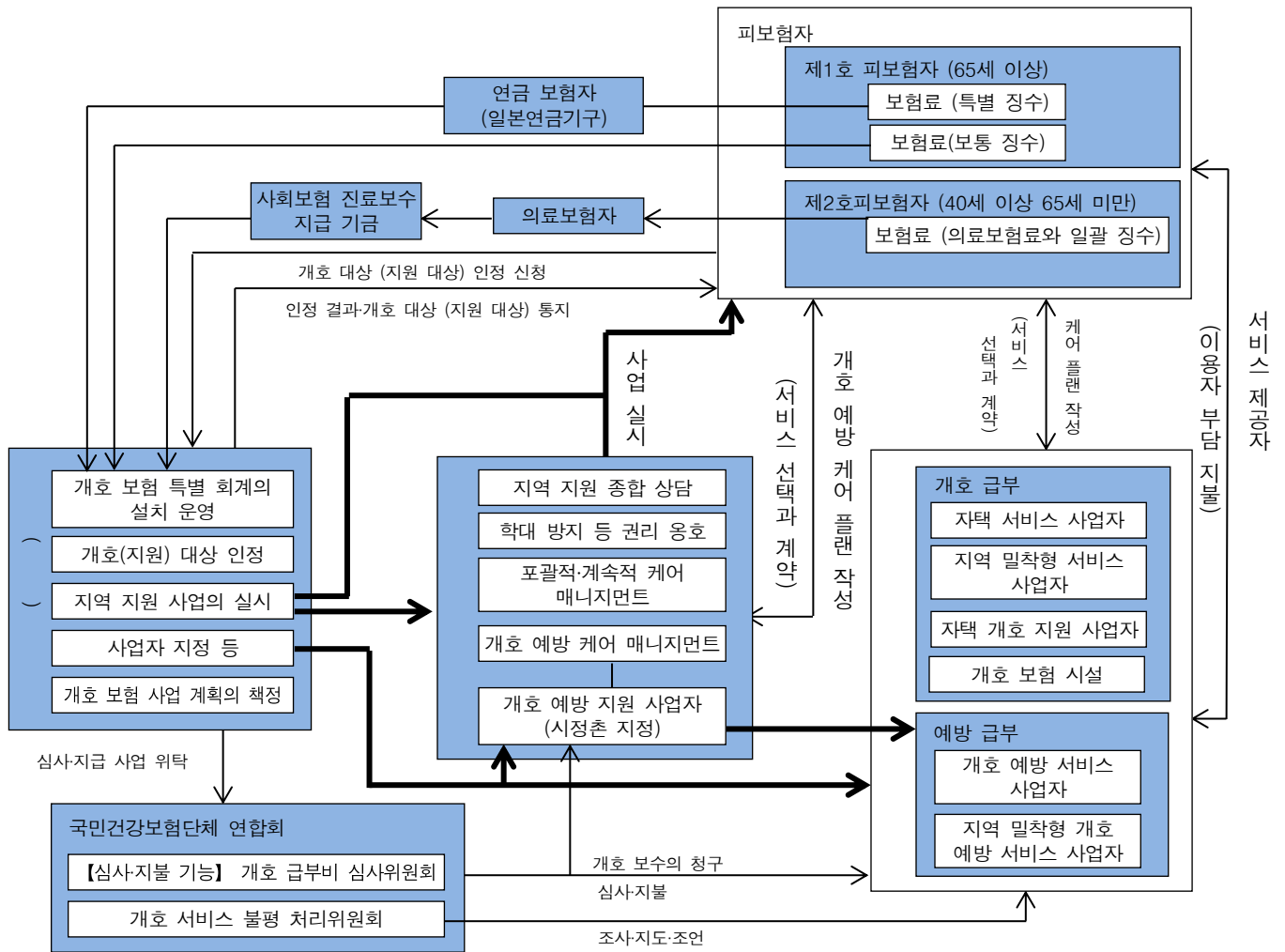
【2025년 8월부터】

●일부 개호 보험 시설, 개호 의료원에 공동실의 방 사용료 부담이 도입됩니다.

“기타형” 및 “요양형”의 개호 노인 보건 시설, “II형” 개호 의료원의 공동실에서, 새로 방 사용료 부담이 도입됩니다.(17~19 페이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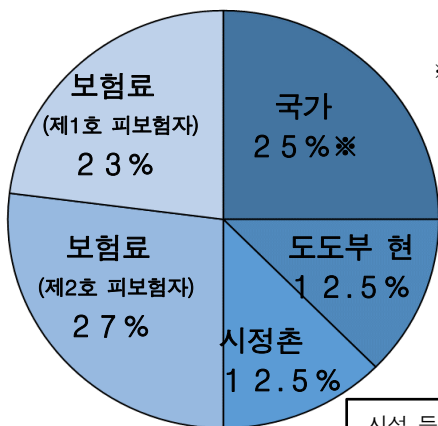
2. 개호 보험 제도의 구조

(1) 개호 보험 제도 전체도



(2) 개호 보험의 자원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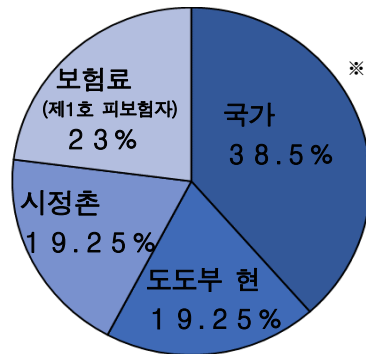
개호 보험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은 서비스 이용자가 지불하는 부담분을 제외하고 공비로 약 반정도를 부담하고 나머지 반을 개호 보험 가입자(피보험자)가 보험료로 부담합니다. 제1호 피보험자와 제2호 피보험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은 인원수에 대비해서 안분하고 있습니다. 자원 구성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국부 부담에는 조정 교부금 5%가 포함됨.

시설 등 급부비에 대해서는
국가 : 20%
도도부 현 : 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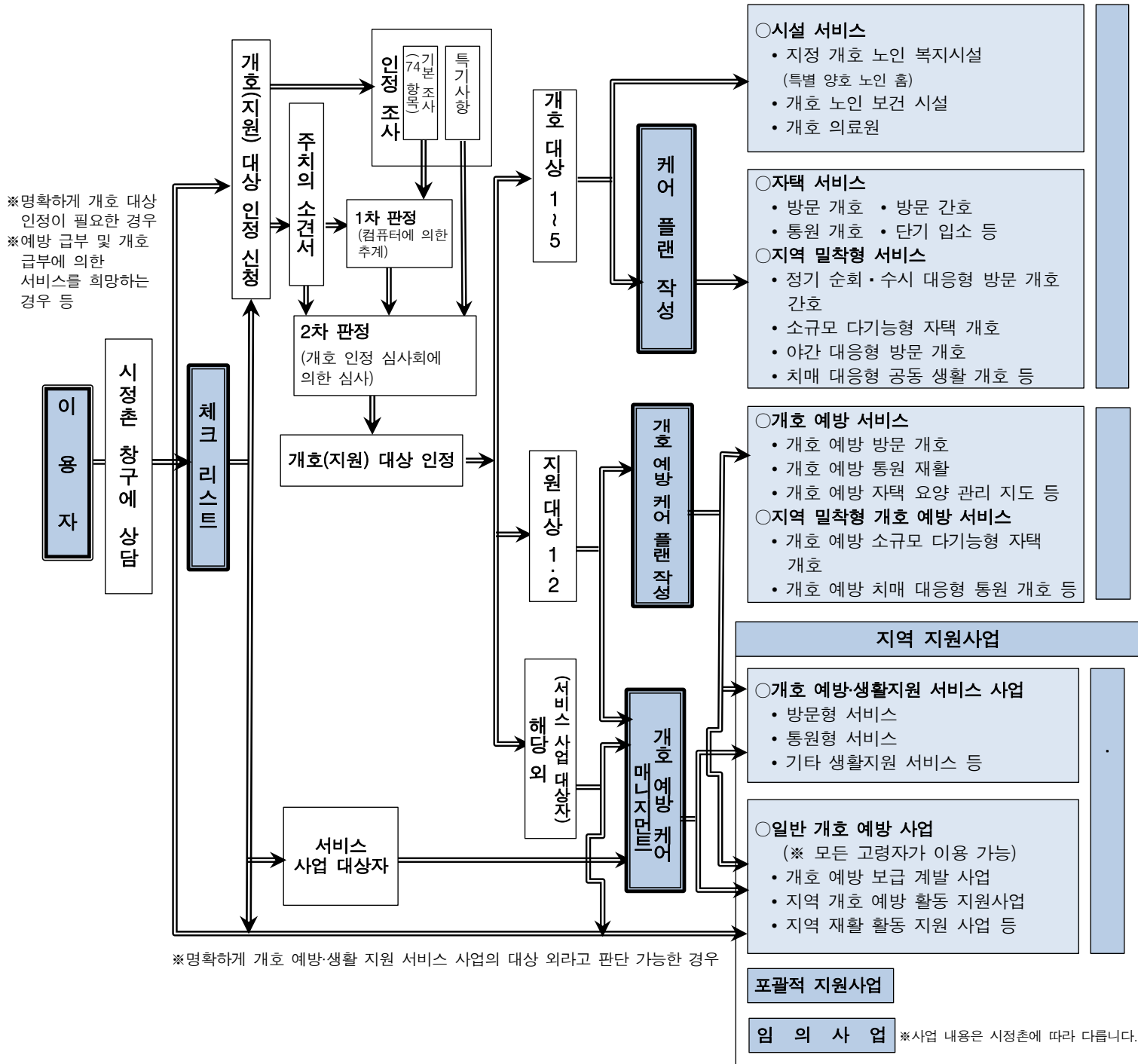
<지역 지원 사업(포괄적 지원 사업·임의 사업)의 자원 구성>



※제2호 피보험자의 보험료는 총당되지 않고, 그 만큼 공비로

개호 예방·일상 생활 지원 종합 사업에 대해서 공비와 개호 보험료의 부담 비율은 왼쪽 그림과 같습니다.

(3) 개호 서비스 등의 이용 절차



1. 개호 보험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거주하는 시정촌에 개호(지원) 대상 인정을 신청하고 인정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은 다음 개호 대상 지원 전문원(케어 매니저) 등이 작성한 케어 플랜에 기반해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2. 지역지원 사업의 이용에 대해서는, 거주지 시정촌에 문의해 주십시오.

○**시정촌 창구에 기본 체크 리스트에 따라 심사를 받습니다. ※실시는 시정촌에 따라 다릅니다.**

이용하는 서비스의 구분(일반 개호 예방 사업, 개호 예방·생활지원 서비스 사업 및 개호(지원) 대상 인정 서비스)을 나눕니다.

○**시정촌 창구에 개호(지원) 대상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은 본인 및 가족, 성년 후견인 등에 의한 신청 외에, 지역 포괄 지원 센터, 성령이 지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정 자택 개호 지원 사업자(케어 플랜 작성 사업자), 개호 보험 시설, 지역 밀착형 개호 노인 복지 시설 등에 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65 세 이상이신 분】

개호가 필요한 원인에 상관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분】

노화에 따른 하기 16 종류의 특정 질병에 의해 개호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p>특정 질병</p> <p>○암(의사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학적 식견에 근거하여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 다다랐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함.)</p> <p>○관절 류마티스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후종인대골화증 ○골절을 동반하는 골다공증 ○초로기의치매</p> <p>○진행성 핵상성 마비, 대뇌 피질 기저핵 변성증 및 파킨슨병 ○척수소뇌변성증 ○척주관 협착증</p> <p>○조로증 ○다계통 위 축증 ○당뇨병성 신경장애, 당뇨병성 신증 및 당뇨병성 망막증 ○뇌혈관질환</p> <p>○폐색성 동맥경화증 ○만성폐쇄성 폐 질환</p> <p>○양쪽 무릎관절 및 고관절의 현저한 변형을 동반하는 변형성 관절증</p>

○**시정촌에 의한 개호(지원) 대상 인정**

인정 조사 결과와 주치의의 소견서에 준하여 시정촌의 ‘개호 인정 심사회’에서 심사·판정합니다.

원칙상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정 결과를 통지합니다. 신규 인정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갱신 인정인 경우는 원칙 12개월)입니다. 단, 심신의 상태에 따라 단축,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정 조사

인정 조사원이 방문합니다. 장애 등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려우신 분 등의 경우, 무료로 통역사 등이 동석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시정촌이 있으므로, 사전에 시(구)정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치의 소견서

주치의가 없는 경우에는 시(구)정촌이 의사를 소개합니다.

○**케어 플랜 작성**

- 자택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개호 지원 전문원(케어 매니저)가 있는 자택 개호 지원 사업자(케어 플랜 작성 사업자)에게 의뢰합니다. 개호 예방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지역 포괄 지원 센터등에 의뢰합니다. 또한, 자택 서비스, 개호 예방 서비스의 케어 플랜은 본인이 작성하여 시정촌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개호 예방· 일상생활 지원 종합사업을 이용할 경우에는 지역 포괄 지원 센터에 상담 받으십시오.
- 시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직접 시설에 신청합니다. 또한, 케어 매니저 등도 시설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구체적인 내용과 이용일, 시간대, 이용료 등에 대하여 서비스 사업자와 충분히 상담을 하신 후 계약합니다. 서비스 내용 중 개선이 필요한 점 등이 있으면 케어 매니저 및 지역 포괄 지원 센터, 서비스 사업자 등이 상담에 응합니다.

○**이용료 지불**

서비스의 이용자 부담액은 비용의 10%에서 30%(※)입니다. 단, 거주비(체재비)·식비 등의 실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각 서비스 종류의 비용은 개호 대상 정도에 따라 개호 보수로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 시에 납득이 될 때까지 설명을 들어 주십시오.

(※) 상세 사항은 ‘7. 이용자 부담’(16페이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개호 보험으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

개호(지원) 대상 인정 중에서 상태 구분이 '개호 대상 1~5'인 분은 개호 급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1·2'로 인정된 분은 예방 급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호 서비스 종류>

개호 급부	예방 급부
<p>◎자택 서비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width: 45%;"> <p>【방문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 개호 (홈 헬프) ○방문 입욕 개호 ○방문 간호 ○방문 재활 ○자택 요양 관리 지도 ○공생형 방문 개호(홈 헬프) <p>○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p> <p>○복지용구 대여</p> <p>○특정 복지용구 판매</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width: 45%;"> <p>【통원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원 개호 (데이 서비스) ○통원 재활 (데이 케어) ○공생형 통원 개호(데이 서비스) </div>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margin-top: 10px;"> <p>【단기 입소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 입소 생활 개호 (단기 입소) ○단기 입소 요양 개호 (단기 입소) ○공생형 단기 입소 생활 개호 (쇼트 스테이) </div> <p style="margin-top: 20px;">◎자택 개호 지원</p> <p style="margin-top: 10px;">◎주택 개조수리비</p> <p style="margin-top: 20px;">◎시설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 개호 노인 복지시설 원칙 상, 개호 대상 3 이상 특례 입소 (개호 대상 1, 2) ○개호 노인 보건 시설 ○개호 의료원 <p style="margin-top: 20px;">◎지역 밀착형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 순회·수시 대응형 방문 개호 간호 ○야간 대응형 방문 개호 ○치매 대응형 통원 개호 ○소규모 다기능형 자택 개호 ○치매 대응형 공동 생활 개호 (그룹 홈) ○지역 밀착형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 ○지역 밀착형 개호 노인 복지 시설 입소자 생활 개호 원칙 상, 개호 대상 3 이상, 특례 입소(개호 대상 1·2) ○간호 소규모 다기능형 자택 개호 (복합형 서비스) ○지역 밀착형 통원 개호 ○공생형 지역 밀착형 통원 개호 	<p>◎개호 예방 서비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width: 45%;"> <p>【방문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호 예방 방문 입욕 개호 ○개호 예방 방문 간호 ○개호 예방 방문 재활 ○개호 예방 자택 요양 관리 지도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width: 45%;"> <p>【통원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호 예방 통원 재활 (데이 서비스) </div>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margin-top: 10px;"> <p>【단기 입소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호 예방 단기 입소 생활 개호 (단기 입소) ○개호 예방 단기 입소 요양 개호 (단기 입소) ○공생형 개호 예방 단기 입소 생활 개호 (쇼트 스테이) </div> <p style="margin-top: 20px;">◎개호 예방 지원</p> <p style="margin-top: 10px;">◎개호 예방 주택 개조 수리</p> <p style="margin-top: 20px;">◎지역 밀착형 개호 예방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호 예방 치매 대응형 통원 개호 ○개호 예방 소규모 다기능형 자택 개호 ○개호 예방 치매 대응형 공동 생활 개호 (그룹 홈)

공생형 서비스: 동일한 사업소에서 일체적으로 개호 보험과 장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1) 자택 개호 지원·개호 예방 지원

	개호 급부(개호 대상 1~5 인 분)	예방 급부(지원 대상 1·2 인 분)
<p>케어 플랜 작성</p> <p>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p> <p>전액이 보험 급부되어 이용자 부담은 없습니다.</p>	<p>자택 서비스 등을 적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자택 개호 지원 사업소의 케어 매니저가 심신 상태 환경 본인 희망 등에 기반한 케어 플랜을 작성해 서비스 이용 상황 확인 등을 합니다.</p> <p>개호 보험 시설에 입소하실 경우에는 시설의 케어 매니저가 케어 플랜을 작성합니다.</p>	<p>개호 예방 서비스 등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케어 플랜을 작성함과 동시에 서비스 제공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자 등과 연락·조정합니다. 또한, 개호 예방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여, 생활 기능의 개선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p> <p>지역 포괄 지원 센터, 또는 자택 개호 지원사업소의 케어 매니저가 케어 플랜을 작성합니다.</p>

(2) 자택 서비스 등

		개호 급부(개호 대상 1~5 인 분)	예방 급부(지원 대상 1·2 인 분)							
방 문 서비스	방문 개호 (홈 헬프)	방문 개호원(홈 헬퍼)가 자택을 방문해서 입욕, 용변, 식사 등의 신체 개호와 조리, 세탁 등의 생활 지원을 합니다. 통원 등을 위한 승하차 도우미(통원 등의 승하차 도우미)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입욕 개호	개호 직원과 간호사가 욕조가 탑재된 입욕차 등으로 자택을 방문해 입욕 개호를 합니다.	자택에 욕조가 없는 경우 또는 질병 등의 이유로 자택 외의 시설에서 입욕 이용이 곤란하신 경우에 개호 예방을 목적으로 한 입욕 지원을 합니다.							
	방문 간호	간호사 등이 자택을 방문해 영양 상황의 확인과 지도, 진료에 필요한 보조 등을 합니다.	간호사 등이 자택을 방문해 개호 예방을 목적으로 한 영양 상황 확인이나 지도, 진료에 필요한 보조 등을 합니다.							
	방문 재활	이학요법사 또는 작업요법사 등이 자택을 방문해 자택에서의 생활 동작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활 치료를 합니다.	자택에서의 생활 동작을 향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학요법사 또는 작업요법사 등이 자택을 방문해 개호 예방을 목적으로 필요한 재활치료를 합니다.							
	자택 영양 관리 지도	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이 자택을 방문해 영양상의 관리와 지도를 합니다.	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이 자택을 방문해 개호 예방을 목적으로 한 영양상의 관리와 지도를 합니다.							
통 원 서비스	통원 개호 (데이 서비스)	무박으로 데이 서비스 센터 등을 통원해 입욕, 용변, 식사 등의 개호와 기능 훈련 등을 받습니다.								
	통원 재활 (데이 케어)	무박으로 노인 보건 시설 및 의료 기관 등을 통원해 심신의 기능 유지, 회복 등을 위해 필요한 재활 치료를 받습니다.	무박으로 노인 보건 시설 또는 의료 기관 등을 통원해 개호 예방을 목적으로 심신의 기능 유지, 회복 등을 위해 필요한 재활 치료를 받습니다.							
복지용구·주택 개조 수리 관계	복지용구 대여	일상 생활의 자립을 도와주는 복지용구를 대여합니다.	복지용구 중 개호 예방에 도움이 되는 용구를 대여합니다.							
		하기의 표는 복지용구 대여 대상 종목입니다.								
		종 목		지원 대상	개호 대상					
				1	2	1	2	3	4	5
		난간(공사가 필요 없는 것)		○	○	○	○	○	○	○
		슬로프(공사가 필요 없는 것)		○	○	○	○	○	○	○
		보행기		○	○	○	○	○	○	○
		보행 보조 지팡이		○	○	○	○	○	○	○
		자동 용변 처리장치(소변만 자동으로 흡인하는 기능이 있는 것)		○	○	○	○	○	○	○
		휠체어					○	○	○	○
		휠체어 부속품					○	○	○	○
		특수 침대					○	○	○	○
		특수 침대부속품					○	○	○	○
		욕창 방지용구					○	○	○	○
		체위 변환기					○	○	○	○
치매 노인 배회 감지 기기					○	○	○	○		
이동용 리프트(받침대 부분 제외)					○	○	○	○		
자동 용변 처리장치 (소변만 자동으로 흡인하는 기능인 것은 제외)							○	○		
※고정용 슬로프, 보행기, 보행 보조 지팡이는, 앞으로 렌탈 또는 구매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일정 조건에 이용하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호 급부(개호 대상 1~5 인 분)	예방 급부(지원 대상 1·2 인 분)
복지용구·주택 개조 수리 관계	특정 복지용구 판매	복지용구 중, 입욕 또는 배설에 사용하는 용구를 구입한 경우, 연간 10만 엔을 한도로(이용자 부담 10%에서 30%를 포함함.) 구입 비용을 지급합니다. (※1 참조) 또한, 특정 복지용구 판매 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에게서 구입한 경우에 한합니다. 【종목】 노인 변기(변좌 바닥부 상승 부재도 포함), 자동 용변 처리장치의 교환 가능 부품, 입욕 보조 용구, 간이 욕조, 이동용 리프트의 받침대 부분, 배설 예측 지원기기	
	주택 개조 수리	자립 및 개호하기 쉬운 생활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소규모의 주택 개조 수리에 대해 20만 엔을 한도로(이용자 부담 10%에서 30%를 포함함.) 지급합니다. (※1 참조). 시정촌에 사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종목】 난간 장착, 단차나 통로 등의 경사 해소, 미끄럼 방지 등을 위한 바닥재 등의 변경, 미닫이문 등의 문의 교체(문의 철거 포함), 구식 변기에서 좌변기로의 교체 및 이러한 공사의 부대 공사(단차 해소를 위한 슬로프 설치에 따른 전락 방지 펜스 설치 포함)	
단기 입소 서비스	단기 입소 생활 개호 (단기 입소)	개호 노인 복지 시설(특별 양호 노인 홈) 등의 시설에 단기간 입소해 입욕, 용변, 식사 등의 개호 및 기능 훈련 등을 받습니다.	개호 노인 복지 시설(특별 양호 노인 홈) 등의 시설에 단기간 입소해 입욕, 용변, 식사 등의 개호 및 기능 훈련 등을 받습니다.
	단기 입소 요양 개호 (단기 입소)	개호 노인 보건 시설등의 시설에 단기간 입소해 간호, 의학적인 관리하에 개호와 기능 훈련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와 간호 서비스 등을 받습니다.	개호 노인 보건 시설등의 시설에 단기간 입소해, 개호 예방을 목적으로 간호·의학적인 관리 하에서 지원, 기능 훈련 기타 필요한 의료 또는 간호 등을 실시합니다.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		개호 포함 유료 노인 홈 및 저비용 노인 홈, 요양 노인 홈 등(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의 지정을 받은 시설에 한함)에 입주하신 분에게 입욕, 용변, 식사 등의 개호와 기능 훈련 등을 합니다.	개호 포함 유료 노인 홈 및 저비용 노인 홈, 요양 노인 홈 등(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의 지정을 받은 시설에 한함)에 입주하신 분에게 입욕, 용변, 식사 등의 개호와 기능 훈련 등을 합니다.

(※1) 원칙상 이용자가 우선 전 금액을 사업자에게 지불한 다음에 개호 보험에서 환급되는 상환 지불에 따라 지급됩니다.

(단,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용자 부담분을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시정촌도 있습니다.)

(3) 시설 서비스

	개호 급부(개호 대상 1~5 인 분)	예방 급부(지원 대상 1·2 인 분)
지정 개호 노인 복지시설 (특별 양호 노인 홈)	원칙 상, 개호 대상 3 이상 특례 입소(개호 대상 1·2) 항상 개호가 필요하고 재택 생활이 곤란한 분이 일상 생활 상의 도움, 기능 훈련, 요양 상의 도움 등의 서비스를 받으며 생활하는 시설입니다. (입소 정원 30명 이상의 시설에 한함.)	특례입소의 요건 ① 치매이신 분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증상, 행동이나 의사소통의 곤란함이 빈번하게 보인다. ② 지적장애·정신장애 등을 동반하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증상, 행동이나 의사소통의 곤란함 등이 빈번하게 보인다. ③ 가족 등으로부터 심각한 학대가 우려되는 것 등으로 심신의 안전 및 안심을 확보하기 어렵다. ④ 단신 세대이며 동거 가족이 고령 또는 병약자 등으로 가족 등의 지원을 받기 어렵고 동시에 지역에서의 개호 서비스나 생활 지원 공급이 불충분하다.
개호 노인 보건 시설	병환의 상태가 안정되고 재활 및 간호, 개호를 필요로 하시는 분의 자택 복귀를 목표로 하는 시설입니다.	
개호 의료원	일상적인 의학 관리가 필요한 중도 개호자의 수용 및 간호·터미널 등의 기능과 생활 시설로서의 기능을 겸비한 시설입니다.	

(4) 지역 밀착형 서비스

지원 필요, 개호가 필요한 상태라도 가능한 한 익숙한 지역에서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시정촌이 사업소의 지정, 감독을 합니다.

원칙상 소재하는 시정촌의 주민(피보험자)만이 이용 가능합니다.

	개호 급부(개호 대상 1~5 인 분)	예방 급부(지원 대상 1·2 인 분)
정기 순회, 수시 대응형 방문 개호	정기적인 순회 방문 또는, 수시 통보를 통해 입욕·배설·식사 등의 개호 및 그 외에 정해진 일상 생활 상의 도움, 영양 상의 도움 또는 필요한 진료 보조를 실시합니다.	
야간 대응형 방문 개호	야간에 정기적인 순회 방문 또는 수시 통보를 통해 입욕·배설·식사 등의 개호 및 그 외에 정해진 일상 생활 상의 도움을 실시합니다. (정기 순회·수시 대응형 방문 개호 간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함.)	
치매 대응형 통원 개호	치매인 분이 데이 서비스 센터 등을 당일 이용하며 입욕·배설·식사 등의 개호 및 그 외에 정해진 일상 생활 상의 도움 및 기능 훈련 등을 실시합니다.	치매인 분이 데이 서비스 센터 등을 당일 이용하며 개호 예방 서비스 계획에 정해진 기간에 걸쳐 입욕·배설·식사 등의 지원 및 기능 훈련을 실시합니다.
소규모 다기능형 자택 개호	개호 대상자의 심신 상태, 환경 등에 따라, 이용자의 선택에 기반하여 방문, 통원 및 단기간 숙박을 조합한 뒤 입욕·배설·식사 등의 개호 및 그 외에 정해진 일상 생활 상의 도움 및 기능 훈련 등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자의 심신 상태, 환경 등에 따라, 이용자의 선택에 기반하여 방문, 통원 및 단기간 숙박을 포함한 뒤 개호 예방을 목적으로 한 입욕·배설·식사 등의 지원 및 그 외에 정해진 일상 생활 상의 지원 및 기능 훈련을 실시합니다.
치매 대응형 공동 생활 개호 (그룹 홈)	치매인 분(급성 상태인 분을 제외함.) 이 소인원으로 공동 생활을 영위하는 주거지에서 입욕·배설·식사 등의 개호 및 그 외의 일상 생활 상의 도움 및 기능 훈련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 2에 해당하는 분으로, 치매인 분(급성 상태인 분을 제외함.) 이 소인원으로 공동 생활을 영위하는 주거지에서, 개호 예방을 목적으로 한 입욕·배설·식사 등의 지원 및 그 외에 일상 생활 상의 지원 및 기능 훈련을 실시합니다.
지역 밀착형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	유료 노인 홈 등의 특정 시설에서 입주자가 개호 대상자와 그의 배우자 등으로 한정된 곳 중, 입주 정원 29명 이하인 소규모의 시설에 입주한 개호 대상자에게 입욕·배설·식사 등의 개호 및 그 외에 정해진 일상 생활 상의 도움, 기능 훈련 및 영양 상의 도움을 실시합니다.	
지역 밀착형 개호 노인 복지 시설 입소자 생활 개호	원칙 상, 개호 대상 3 이상 특례 입소(개호 대상 1·2) 입소 정원 29명 이하인 소규모의 특별 양호 노인 홈에서 입욕·배설·식사 등의 개호 및 그 외의 일상 생활 상의 도움, 기능 훈련, 건강 관리 및 영양 상의 도움을 실시합니다.	
간호 소규모 다기능형 자택 개호 (복합형 서비스)	방문 간호와 소규모 다기능형 자택 개호를 조합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역 밀착형 통원 개호	입소 정원 18 명 이하의 소규모 통원 개호시설로 일상 생활상의 도우미와 기능 훈련 등을 합니다.	

사 업	내 용
개호 예방 케어 매니지먼트	지원 대상자 등에 대해 종합 사업에 의한 서비스 등이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케어 매니지먼트를 실시합니다. (1) 개호 예방 서비스 (2) 지역 밀착형 개호 예방 서비스 (3) 개호 예방·일상 생활 지원 종합 사업 이용하시는 분 ⇒개호 대상 1·2이신 분

B. 일반 개호 예방 사업

사 업	내 용
개호 예방 파악 사업	수집한 정보 등을 활용하여 자택 은둔 등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을 파악하여 개호 예방 활동으로 연결한다.
개호 예방 보급 계발 사업	개호 예방 활동의 보급 및 계발을 실시한다
지역 개호 예방 활동 지원 사업	주민 주체 개호 예방 활동을 육성·지원한다
일반 개호 예방 사업 평가 사업	개호 보험 사업 계획에 정한 목표치 달성 상황 등을 검증하고 일반 개호 예방 사업 평가를 실시한다.
지역 재활 활동 지원 사업	개호 예방 대책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통원, 방문, 지역 케어 회의, 주민 전체가 갈 수 있는 장소 등에 대한 재활 전문직 등의 조언 등을 실시

(2) 포괄적 지원 사업

A. 지역 포괄 지원 센터 운영

지역 포괄 지원 센터는 고령자가 가능한 한 익숙한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거주, 의료, 개호, 예방, 생활 지원 서비스를 일체적으로 제공하는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구축해가기 위한 코디네이트 기관입니다. 센터에는 보건사, 사회 복지사, 주임 개호지원 전문원(주임 케어 매니저)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종합 상담 지원 사업

센터에서는 건강이나 복지, 의료와 생활에 관한 것 또는 고령자의 가족, 이웃에 사는 고령자에 관한 상담을 받습니다.

상담을 접수한 센터는 개호 보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도 및 지역 자원을 이용한 적절한 서비스와 연결하여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합니다.

○권리 옹호 사업

센터에서는 고령자 학대에 대한 대응이나 성년 후견 제도의 이용에 있어서의 지원, 소비자 피해의 방지 등을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호 예방 케어 매니지먼트 사업(재 계재)

○포괄적·계속적 케어 매니지먼트 지원 사업

센터에서는 주임 케어 매니저 등이, 고령자가 좋은 지역을 만들기 만들기 만들기 위해 다양한 관계 연계 체제 구축을 추진합니다.

또한 지역의 케어 매니저 지원을 실시하여 보다 서비스 제공을 추진합니다 추진합니다 추진합니다 추진합니다 추진합니다.

B. 재택 의료·개호 연계 추진

의료와 개호가 모두 필요한 상태의 고령자가 익숙한 지역에서 자신 다운 삶을 살며 인생의 마지막까지 보낼 수 있도록, 재택 의료와 개호를 일체화해서 제공하기 위해 의료 기관과 개호 사업소 등의 관계자와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C. 치매 시책 추진

치매자를 포함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인의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서로 간에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고 서로 도우면서 공생하는, 활력이 있는 사회(공생 사회)의 실현을 지향하여, 치매자나 가족의 시각을 중요시하면서 치매증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 초기 집중지원팀 설치

여러명의 의료·개호 전문직원이, 치매가 의심되는 분이나 치매자 및 그의 가족을 방문하여 관찰·평가를 실행한 후, 필요한 의료 또는 개호의 도입·조정, 가족지원 등 초기 지원을 포괄적, 집중적(대체로 6개월)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매지역지원 추진원 배치

지역의 지원 기관 간 연계 구축, 치매 케어패스·치매 카페·사회참여 활동 등 지역지원 체제 구축, 치매자나 그 가족 등에 대한 상담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팀 오렌지를 정비

치매자가 가능한 한 지역의 양호한 환경에서 자기다운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치매자나 그 가족의 지원 니즈와 치매 도우미를 중심으로 한 지원을 연계시켜주는 체계를 정비하여 「공생」 지역 조성을 추진합니다.

<치매 질환 의료 센터>

치매에 대해 전문 의료 상담, 감별 진단, 신체 합병증·주변 증상의 급성기 대응, 주치의와의 연계, 환자·가족에 대한 개호 서비스 정보 제공과 상담 대응, 의료 정보 제공 등의 개호 서비스와의 연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원명	소재지	지역구분
의료법인 호쿠토카이 사와 병원	도요나카시	이케다시, 미노시, 도요나카시, 스이타시, 도요노초, 노세초
의료법인 오사카 정신의학연구소 신아부야마 병원	다카쓰키시	셋쓰시, 이바라키시, 다카쓰키시, 시마모토초
사회의료법인 미카미카이 히가시코리 병원	가도마시	히라카타시, 네아가와시, 모리구치시, 가도마시, 다이토시, 시조나와테시, 가타노시
의료법인 세이신카이 야오 고고로노 호스피털	야오시	히가시오사카시, 야오시, 가시와라시
의료법인 무쓰미카이 오사카 사야마 병원	오사카사야마시	마쓰바라시, 후지이데라시, 하비키노시, 오사카사야마시, 돈다바야시시, 가와치나가노시, 다이시초, 가난초, 지하야아카사카무라
의료법인 가와사키카이 미즈마 병원	가이즈카시	이즈미시, 이즈미오쓰시, 다카이시시, 가이즈카시, 기시와다시, 이즈 미사노시, 센난시, 하난시, 다다오카초, 구마토리초, 다지리초, 미사키초
오사카시립 고사이인 부속병원	스이타시	오사카시
사회의료법인 호쿠토카이 호쿠토 클리닉병원	오사카시 다이쇼구	
오사카공립대학 의학부 부속병원	오사카시 아베노구	
의료법인 엔세이카이 마쓰모토 진료소	오사카시 아사히구	
사회복지법인 온시재단 오사카부 사이세이카이 노에병원	오사카시 조토구	
의료법인 구즈모토 의원	오사카시 히가시스미요시구	
재단법인 아사카야마 병원	사카이시 사카이구	사카이시
의료법인 교와카이 한난 병원	사카이시 나카구	

홈페이지

오사카부 인지증 질환 의료 센터

검색

D. 생활 지원 서비스 체제 정비

시정촌이 중심이 되어 생활 지원 코디네이터(지역 서로 돕기 추진원)를 배치하여, NPO·민간 기업·협동조합·봉사단체·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협의회·지연조직·개호 서비스 사업소·실버 인재 센터·노인 클럽·상공회·민생위원 등의 생활 지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업 주체와 연계하면서 다양한 일상 생활 상의 지원 체제의 충실·강화 및 고령자의 사회 참가 추진을 일체적으로 도모합니다.

E. 지역 케어회의의 추진

지역 포괄 지원 센터 등에서 다직종 협동에 의한 개별 사례 등을 검토하여 지역의 네트워크 구축, 케어 매니지먼트 지원, 지역 과제의 파악 등을 추진합니다.

(3) 임의 사업

고령자가 자신 다운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호 보험 사업의 운영 안정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피보험자 및 개호 대상자를 실제로 개호하는 분 등에 대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예: 개호 급부비 적정화 사업, 가족 개호 지원 사업, 지역 자립 생활 지원 사업 등

5. 개호 서비스 정보의 공표에 대하여

정보 공표 제도의 취지와 구조

개호 서비스 정보의 공표 제도는 이용자가 개호 서비스 사업자의 정보를 비교 검토하여, 적절한 개호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및 운영 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사업자의 보고에 기반하여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의 보고는 법령 등에 의해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8년도부터 도도부현에서 지정 도시로 사무 권한이 이양되어, 2018년 4월 1일 이후에 공표되는 오사카시 또는 사카이시 소재의 사업소, 시설에 관한 정보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각각 오사카시 또는 사카이시의 소관이 됩니다.

○공표 내용

기본 정보…명칭, 소재지, 연락처, 서비스 내용, 서비스 종사자의 수, 시설·설비의 상황 및 이용 요금 등
운영 정보…이용자 본위의 서비스 제공의 구조, 종사자의 교육·연수 상황, 안전·위생 관리 상황 등

○조사에 대해서

도도부현 및 지정 도시는 보고된 정보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개호 서비스 정보 공표 시스템

사업자의 개호 서비스 정보는 국가가 제공하는 홈페이지 '개호 서비스 정보 공표 시스템'에 공표합니다.

또한, 2015년도부터 각 시정촌에서 공표를 위해 노력하도록 정해진 지역 포괄 지원 센터 및 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도 개호 서비스 정보 공표 시스템 상에 공표합니다.

홈페이지

[개호 서비스 정보 공표 시스템](#)

[검색](#)



6. 개호 보험료

개호 급부·예방 급부·지역 지원 사업의 비용은 약 50%가 공비로 조달하고 공비 부담을 제외한 비용은 제1호 피보험자(65세 이상인 분)와 제2호 피보험자(40세 이상 65세 미만인 분)가 보험료로 부담합니다.

(1) 제 1 호 피보험자(65 세 이상) 분의 보험료

A. 보험료액

각 시정촌에서 개호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의 총액(이용자 부담액은 제외)의 23%를 기준으로 65 세 이상인 분의 보험료를 산출하며 시정촌은 그 기준액에 소득단계에 따른 비율을 곱해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피보험자의 소득 상황에 따라 세밀하게 보험료 단계가 설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준액은 각 시정촌이 3 년마다 정하는 개호 보험 사업 계획에 따라 3 년에 한 번 재조정됩니다. (다음번 재검토는 2027년 4월입니다.)

제 1 호 피보험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65 세가 된 달(65 세 생일의 전일이 속하는 월)의 분부터입니다.

<보험료의 설정 예>

보험료 단계	대 상 자		보험료
제 1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보호 수급자 등 세대 전원이 시정촌민세 비과세로 노령 복지연금 수급자 세대 전원이 시정촌민세 비과세로 공적 연금 수입과 합계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80 만엔 이하인 분 		기준액×0.455
제 2 단계	본인이 시정촌민세 비과세	세대 전원이 시정촌민세 비과세	본인의 공적 연금 수입과 합계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20 만엔 이하인 분 기준액×0.685
제 3 단계		제 2 단계 이외 분	기준액×0.69
제 4 단계		같은 세대에 시정촌민세 과세자가 있는 분	본인의 공적 연금 수입과 합계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80 만엔 이하인 분 기준액×0.9
제 5 단계		제 4 단계 이외 분	기준액
제 6 단계	본인이 시정촌민세 과세	본인의 합계 소득 금액이 120 만엔 미만인 분	기준액×1.2
제 7 단계		본인의 합계 소득 금액이 120 만엔 이상 210 만엔 미만인 분	기준액×1.3
제 8 단계		본인의 합계 소득 금액이 210 만엔 이상 320 만엔 미만인 분	기준액×1.5
제 9 단계		본인의 합계 소득 금액이 320 만엔 이상 420 만엔 미만인 분	기준액×1.7
제 10 단계		본인의 합계 소득 금액이 420 만엔 이상 520 만엔 미만인 분	기준액×1.9
제 11 단계		본인의 합계 소득 금액이 520 만엔 이상 620 만엔 미만인 분	기준액×2.1
제 12 단계		본인의 합계 소득 금액이 620 만엔 이상 720 만엔 미만인 분	기준액×2.3
제 13 단계		본인의 합계 소득 금액이 720 만엔이상인분	기준액×2.4

※제1단계에서 제3단계에 대해서는 공비에 의한 부담 경감 조치 등에 의해, 기준액에 대한 비율을 상기 비율보다 인하하여 설정한 시정촌도 있습니다.

※설정 예는 13 단계이나 14 단계 이상을 설정하거나 기준액에 대한 비율을 변경한 시정촌도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구)정촌으로 확인하십시오.

B. 보험료 납입 방법

보통 징수와 특별 징수가 있습니다.

○보통 징수

노령 연금 등이 연금액 18 만엔 미만인 분이나 연금액 18 만엔 이상인 분 중에 연도 도중에 제 1 호 피보험자의 자격을 얻으신 분, 타 시정촌에서 전입해 오신 분 등 특별 징수(연금에서 공제)를 하실 수 없는 분 의 경우에는 시정촌이 발행한 납입통지서에 따라 시정촌에 개별로 납부합니다. 납부 시기와 횟수는 시정촌에 따라 다릅니다.

○특별 징수

노령 연금, 퇴직 연금, 유족 연금, 장애 연금을 연금액 18 만엔 이상 수급하고 있으신 분에 대해서는 연금 보험자(일본연금기구, 공제조합 등)가 연금의 정기 지불(연 6 회) 시 보험료를차감하고 시정촌에 납부합니다.

특별 징수의 가징수 (4 월·6 월·8 월 지불분) 과 본징수 (10 월·12 월·2 월 지불분)

제1호 피보험자인 분의 보험료는 소득 단계별로 설정되므로 당년도의 보험료액은 전년 소득이 확정되는 6월 이후에 결정됩니다. 따라서 전년도부터 계속 특별 징수를 하신 분의 경우 4, 6, 8 월분을 원칙상 2 월에 특별 징수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징수합니다(가징수). 그리고 보험료액이 확정된 후에 가징수분과의 조정이 이루어져 잔여 보험료액이 징수됩니다(본징수).

(2) 제 2 호 피보험자(40 세부터 65 세 미만)인 분의 보험료

40 세부터 65 세 미만인 분의 보험료는 가입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과 건강보험, 공제조합 등의 의료보험의 보험료 산정 방법에 근거해 결정되며, 의료 보험 보험료와 함께 납부합니다.

(3) 보험료 감면 신청 필요

재해 또는 현저한 소득 감소 등의 이유로 보험료 납부가 곤란해진 경우에는 보험료가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지진, 풍수해,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해 주택, 가재 등의 현저한 피해를 입으신 분
- 사망, 심신의 중대한 장애, 또는 장기간의 입원, 사업 또는 업무의 휴/폐지, 사업에서의 현저한 손실, 실업 등에 의해 생계 중심자의 소득이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하신 분

시정촌에 따라서는 독자적인 감면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시(구)정촌에 문의하십시오.

(4) 체납 시 조치

개호 보험은 사회 전체에서 개호 및 지원이 필요한 고령자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분도 보험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반드시 정해진 기일까지 납부합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실 경우, 개호 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 체납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집니다.

1 년 이상 체납한 경우⇒지불 방법이 상환 지불로 변경됩니다

이용자가 비용 전액을 일단 부담하고 신청한 다음에 후일 보험급부분(90% 또는 70%)이 지급됩니다.

1 년 6 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보험급여가 일시적으로 정지됩니다

이용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신청 후에도 보험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일시적으로 지불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체납이 계속될 경우 지불되지 않은 보험급여비를 체납 보험료로 총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년 이상 체납한 경우⇒급여액이 감액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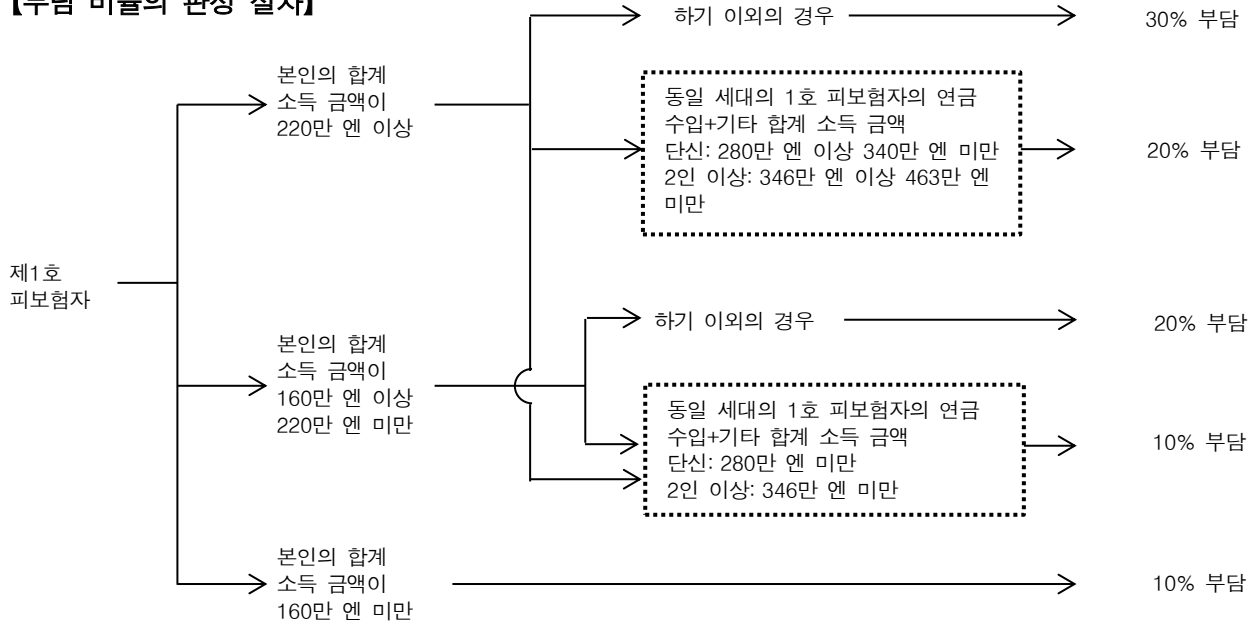
보험료 징수권은 2 년에 시효가 되나 시효에 따라 보험료 징수권이 소멸한 기간에 따라 이용자 부담이 30% 또는 40%로 인상되는 것 외에 고액 개호(개호 예방) 서비스비, 고액 의료 합산 개호(개호 예방) 서비스비, 특정입소자 개호(개호 예방) 서비스비 등이 지불되지 않습니다.

7. 이용자 부담

(1) 이용자 부담

서비스 이용료는 비용의 10%에서 30%를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부담 비율의 판정 절차】



제2호 피보험자, 수급자 본인이 시정촌민세 비과세인 경우 또는 생활 보호법에 규정하는 피보험자인 경우는 소득에 관계 없이 10%를 부담합니다.

개호(지원) 대상 인정을 받은 분에게는 이용자 부담의 비율(10%에서 30%)이 기재된 ‘개호 보험 부담 비율증’이 발행됩니다.

케어 플랜(개호 예방 케어 플랜)의 작성 비용은 전액 개호 보험으로 급여되므로 이용자 부담은 없습니다.

○이용자 부담이 고액으로 되지 않도록 소득에 따른 부담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고액 개호(개호 예방) 서비스비> 신청 필요

이용자 부담 합계액(월액)이 이용자 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분에 대해서 소득 구분에 따라 고액 개호(개호 예방) 서비스비가 지급됩니다. 시(구)정촌에 고액 개호(개호 예방) 서비스비 등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소득 구분		이용자 부담 상한액 (월액)
현역과 동등 수준의 소득자에 상당하는 분이 있는 세대 구성원	연봉 약 1,160만 엔 이상	140,100엔(세대)
	연봉 약 770만 엔 이상~동 약 1,160만 엔 미만	93,000엔(세대)
	연봉 약 383만 엔 이상~동 약 770만 엔 미만	44,400엔(세대)
세대 구성원 중 시정촌민세가 과세되는 분		44,400엔(세대)
세대의 전원이 시정촌민세가 과세되지 않는 분		24,600엔(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령 복지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분 • 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과 공적 연금 등 수입액의 합계가 연간 80만 엔 이하인 분 등 		24,600엔(세대) 15,000엔(개인)
생활 보호를 수급하고 있는 분 등		15,000엔(개인)

(2) 자택 서비스 이용자 부담

자택에서 받는 서비스에는 개호 대상 상태의 구분 마다 1개월당의 지급 한도액(단위 수)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액(10%에서 30%)을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통원 서비스(통원 개호, 통원 재활 등)에 대해서는 이용액(10%에서 30%) 외에 식비, 기저귀비 등을 단기 입소서비스(단기 입소 생활개호, 단기 입소 요양 개호 등)에 대해서는 식비, 체재비 등과 기타 일상 생활비를 부담합니다.

지급 한도액을 초과해 서비스를 받으신 경우에는 초과분의 비용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주요 자택 서비스의 지급 한도액과 한도액의 경우의 이용자 부담(대략적인 수치) 【1 개월당】

구분	지급한도액	이용자 부담액 (10%)	이용자 부담액 (20%)	이용자 부담액 (30%)
지원 대상 1	50,320엔	5,032엔	10,064엔	15,096엔
지원 대상 2	105,310엔	10,531엔	21,062엔	31,593엔
개호 대상 1	167,650엔	16,765엔	33,530엔	50,295엔
개호 대상 2	197,050엔	19,705엔	39,410엔	59,115엔
개호 대상 3	270,480엔	27,048엔	54,096엔	81,144엔
개호 대상 4	309,380엔	30,938엔	61,876엔	92,814엔
개호 대상 5	362,170엔	36,217엔	72,434엔	108,651엔

※지급 한도액은 단위로 표시됩니다. 1단위당 단가는 서비스 종별 및 사업소 소재지에 따라 다릅니다. 표의 지급 한도액은 1 단위=10 엔으로 산출되었습니다.

※표의 지급 한도액이 적용되는 서비스(개호 예방 서비스 포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 개호, 방문 입욕 개호, 방문 간호, 방문 재활 치료, 통원 개호, 통원 재활 치료, 단기 입소 생활 개호, 단기 입소 요양 개호, 복지용구 대여, 정기 순회·수시 대응형 방문 개호 간호, 야간 대응형 방문 개호, 지역 밀착형 통원 개호, 치매 대응형 통원 개호, 소규모 다기능형 자택 개호, 간호 소규모 다기능형 자택 개호(복합형 서비스), 치매 대응형 공동 생활 개호(단기 이용 한정),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단기 이용 한정), 지역 밀착형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단기 이용 한정)

(3) 시설 서비스의 이용자 부담

A. 개호 보험 시설에 입소(입원)해서 시설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의 이용자 부담

- 시설 서비스비의 10%에서 30%를 이용자가 부담합니다.(부담 상한액에 대해서는 16페이지 ‘7(1) 고액 개호(개호 예방) 서비스비’를 참조.)
- 거주비(체재비)·식비는 원칙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부담액의 경감에 대해서는 18페이지 ‘7(3) B. 특정 입소자 개호(개호 예방) 서비스비’를 참조.)
- 특별 서비스 비용(특별 룸 사용료, 특별 식사) · 일상생활비(이발 미용 대금 및 그 밖의 일상생활비로서 규정된 비용)는, 보험 급부의 대상이 아니므로 전액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 시설 서비스비는 시설의 소재 지역, 인원 배치 가산 등에 따라 시설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거주비(체재비), 식비는 시설과의 계약으로 정해지므로 시설마다 다릅니다.
- 영양 매니지먼트의 강화 등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더 충실한 직원 배치, 개호가 곤란하신 분에 대하여 고도의 케어를 실시하는 시설 등에서는 이용료가 높아집니다.

※이용료 예시는 18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용료 예 <시설 서비스비의 10%에서 30% 상당액·월액(30일)>

종 별		부담 비율	개호 대상 1	개호 대상 2	개호 대상 3	개호 대상 4	개호 대상 5
개호 노인 복지 시설 (특별요양 노인 홈)	공동실	10%			22,948엔	25,143엔	27,306엔
		20%			45,896엔	50,285엔	54,612엔
		30%			68,845엔	75,428엔	81,918엔
	단일형 개인실	10%			25,550엔	27,776엔	29,939엔
		20%			51,101엔	55,552엔	59,879엔
		30%			76,651엔	83,328엔	89,818엔
개호 노인 보건 시설	공동실	10%	24,861엔	26,428엔	28,466엔	30,127엔	31,726엔
		20%	49,721엔	52,856엔	56,932엔	60,255엔	63,452엔
		30%	74,582엔	79,284엔	85,397엔	90,382엔	95,179엔
	단일형 개인실	10%	25,143엔	26,585엔	28,623엔	30,347엔	31,914엔
		20%	50,285엔	53,170엔	57,245엔	60,694엔	63,829엔
		30%	75,428엔	79,754엔	85,868엔	91,040엔	95,743엔
개호 의료원	I형 (I) (종래형 개인실)	10%	22,603엔	26,083엔	33,545엔	36,742엔	39,595엔
		20%	45,207엔	52,166엔	67,089엔	73,484엔	79,190엔
		30%	67,810엔	78,250엔	100,634엔	110,227엔	118,785엔
	II형 (I) (종래형 개인실)	10%	21,161엔	24,171엔	30,754엔	33,513엔	36,021엔
		20%	42,323엔	48,342엔	61,509엔	67,026엔	72,042엔
		30%	63,484엔	72,513엔	92,263엔	100,539엔	108,063엔

※1 단위=10.45 엔(5 급지)으로 시산

※고액 개호 서비스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16페이지 “7(1)고액 개호(개호 예방) 서비스비”의 표에 기재된 금액입니다.

B. 이용자의 부담 경감 제도

신청 필요

○특정 입소자 개호(개호 예방) 서비스비

소득이 낮은 분의 상기 시설 서비스(지역밀착형 개호노인 복지시설 입소자 생활개호, 개호(개호 예방) 단기 입소 생활개호 및 개호(개호 예방) 단기 입소요양개호를 포함한다)의 이용이 곤란하지 않도록 거주비(체재비)·식비에 대해 소득 구분에 따른 부담 한도액을 마련하여 기존 비용액과 한도액의 차액을 지급합니다. (시설이 정하는 거주비(체재비)·식비액이 기존 비용액보다 적은 경우는 시설이 정하는 금액과 한도액의 차액이 지급됩니다.)

※시정촌에 신청하여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교부된 ‘개호 보험 부담 한도액 인정증’을 사업자에게 제시합니다.

- ① 세대 전원이 시정촌민세 비과세인 조건에 더해 개호 대상자 또는 지원 대상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않는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와 동등한 사정에 있는 자를 포함함)에 대해서도 시정촌민세 비과세일 것.
- ② 개호 대상자 또는 지원 대상자 및 배우자가 소유하는 현금, 예적금, 합동 운용 신탁, 공모 공사채 등 운용 투자 신탁 및 유가 증권과 기타 이러한 종류의 자산의 합계액이 제1단계: 2,000만 엔(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1,000만 엔), 제2단계: 1,650만 엔(650만 엔), 제3단계①: 1,550만 엔(550만 엔), 제3단계②: 1,500만 엔(500만 엔) 이하일 것. (기타 이러한 종류의 자산에는 순금 적립 구입 등, 계좌 잔액 등으로 인해 시가 평가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귀금속 등이 포함됩니다.)

(참고) 이용자 부담 단계와 부담 한도액

이용자 부담 단계	대 상 자	식비 부담 한도액 (1 일)		거주비(체재비) 부담 한도액(1 일)			
		시설 입소자	단기 입소 이용자	시설 입소자	단기 입소 이용자	시설 입소자	단기 입소 이용자
제 1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대 구성원 모두가 시정촌민세 비과세 분으로, 노령 복지 연금을 지급하는 분 •생활 보호 등을 지급하는 분 	300 엔	300 엔	820 엔 2024년 8월부터 880 엔	490 엔 2024년 8월부터 550 엔	490 엔 (320 엔) 550 엔 (380 엔)	0 엔

이용자 부담 단계	대 상 자		식비 부담 한도액 (1 일)		거주비(체재비) 부담 한도액(1 일)			
			시설 입소자	단기 입소 이용자	시설 입소자	단기 입소 이용자	시설 입소자	단기 입소 이용자
제 2 단계	세대 전원이 시정촌민세 비과세	본인의 합계 소득 금액과 과세 연금 수입액 및 비과세 연금 수입액의 합계가 연간 80 만 엔 이하인 분	390 엔	600 엔	820 엔 2024년 8월부터 880 엔	490 엔 2024년 8월부터 550 엔	490 엔 (420 엔) 2024년 8월부터 550 엔 (480 엔)	370 엔 2024년 8월부터 (430 엔)
제 3 단계 ①		본인의 합계 소득 금액과 과세 연금 수입액 및 비과세 연금 수입액의 합계가 연간 80 만 엔 초과 120 만 엔 이하인 분	650 엔	1,000 엔	1,310 엔 2024년 8월부터 1,370 엔	1,310 엔 2024년 8월부터 1,370 엔	1,310 엔 (820 엔) 2024년 8월부터 1,370 엔 (880 엔)	370 엔 2024년 8월부터 (430 엔)
제 3 단계 ②		본인의 합계 소득 금액과 과세 연금 수입액 및 비과세 연금 수입액의 합계가 연간 120 만 엔 초과인 분	1,360 엔	1,300 엔				
제 4 단계	• 상기 이외의 분		자기부담 한도액 없음					
(参考) 基準費用額			1,445 엔		2,006 엔 2024년 8월부터 2,066 엔	1,668 엔 2024년 8월부터 1,728 엔	1,668 엔 (1,171 엔) 2024년 8월부터 1,728 엔 (1,231 엔)	377 엔 (855 엔) 2024년 8월부터 437 엔 (915 엔) ※

· ()는 개호 노인 복지 시설, 단기 입소 생활 개호(개호 예방 포함) 및 지역 밀착형 개호 노인 복지 시설 입소자 개호
· 「단일형 개인실적 공동실」은 2021년 4월 이후 새로운 설치가 금지되었습니다.

※2025년 8월 이후, “기타형” 및 “요양형” 개호 노인 보건 시설의 공동실 및 “II형” 개호 의료원의 공동실을 이용할 경우에는 기준 비용 금액(공동실의 거주비 부분)이 437 엔에서 697 엔으로 변경됩니다.

○시정촌민세 과세층의 거주비(체재비)·식비의 특례 감액 조치

신청 필요

본인 또는 세대 구성원이 시정촌민세를 과세하는 ‘7(3) B. 특정 입소자 개호(개호 예방) 서비스비’의 이용자 부담액 단계 제4 단계에 해당하는 고령 부부 등 세대라 하더라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촌에 신청함으로써 제3 단계의 부담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회 복지법인 등에 의한 이용자 부담 경감

신청 필요

시정촌민세 세대 비과세자로 수입과 자산 등의 요건을 만족하고 시정촌이 생계곤란을 인정한 분이 사회 복지 법인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경우 이용자 부담분, 거주비(체재비), 식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이용자 부담의 1/4 이 감액됩니다(노령복지 연금 수급자는 원칙상 1/2).

※시정촌에 신청하고 ‘사회복지법인 등 이용자 부담 경감확인증’ 교부를 받습니다.

(5) 고액 의료 합산 개호 (개호예방)서비스비

신청 필요

○의료와 개호의 부담액이 현저하게 고액인 경우의 부담 경감 제도

개호 보험 서비스 및 각 의료 보험(국민 건강 보험, 피용자 보험,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의 부담액이 고액인 경우에는 각각의 제도에 부담 상한액(월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를 초과한 분이 지급됩니다.

이에 더해 1년간(매년 8월 1일부터 이듬해 7월 31일까지) 지불된 개호 보험 서비스의 이용자 부담(10%에서 30%)과 각 의료 보험의 세대 내 자기 부담의 합계액이 고액인 경우에도 소득 구분 마다 일정한 한도액을 초과한 분을 각각 부담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개호 보험에서는 ‘고액 의료 합산 개호(개호 예방) 서비스비’, 각 의료 보험에서는 ‘고액 개호 합산 요양비’로 지급됩니다.

※부담액은 고액 개호(개호 예방) 서비스비 및 고액 요양비의 지급액을 제외한 금액이 대상입니다.

지급 받을 경우에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절차는 시정촌에 문의해 주십시오.

○개호 보험과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를 이용한 경우의 자기 부담 한도액

소득 구분		자기부담 한도액 (연액)	
과세 세대	현역과	과세 소득 690만 엔 이상	212만엔
	비슷한 소득자	과세 소득 380만 엔 이상	141만엔
		과세 소득 145만 엔 이상	67만엔
	일 반		56만엔
비과세 세대	저소득 II		31만엔
	저소득 I		19만엔

기타 재난 등의 경우는 이용자 부담 감면이나 시정촌에 따라서는 독자적인 감면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시정촌에 문의해 주십시오.

8. 고령자의 권리 옹호를 위해서

(1) 권리옹호 상담사업

치매, 지적 장애, 정신 장애 등으로 인해 판단 능력이 불충분하신 분이 사회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권리 침해와 생활상의 불안과 곤란하신 일 등에 대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또한, 지역 포괄 지원 센터, 장애인 기간상담지원 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지역 관계기관에 전문적인 조언이나 정보 제공을 합니다.

상담 기관	오사카시·사카이시 이외에 거주하시는 분	오사카 시내에 거주하시는 분	사카이 시내에 거주하시는 분
		오사카부 사회복지 협의회 지역복지부 권리옹호추진실	오사카시 성년 후견 지원 센터
전화 상담	TEL : 06-6191-9500 월~금요일 10:00~16:00 ※공휴일, 연말연시 제외	성년 후견 제도에 관한 상담 TEL : 06-4392-8282 월~토요일 9:00~17:00 ※공휴일, 연말연시 제외	TEL : 072-225-5655 월~금요일 9:00~17:30 ※공휴일, 연말연시 제외 주요 업무로서, 지역의 관계 기관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 정보 제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 상담	변호사, 사회복지사에 의한 대면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13:00~16:00 (전화상담으로 예약, 상담은 무료)	보건 복지 센터, 지역 포괄 지원 센터, 장애인 기간 상담 지원 센터 등이 판단 능력이 충분치 못한 사람을 지원할 때, 성년 후견 제도의 이용 지원을 시행한 다음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요청에 기반하여 전문직(변호사·사법서사·사회복지사)을 파견합니다. 예약제·무료 TEL : 06-4392-8214	변호사 또는 사법서사와 사회복지사에 의한 대면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약제·무료

(2) 일상생활 자립 지원 사업

치매, 지적 장애, 정신 장애 등으로 인해 판단 능력이 불충분하신 분에게 복지 서비스의 이용 도우미나 일상적 금전 관리, 서류 등의 보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문의는 각 시정촌 사회 복지 협의회로 해 주십시오.

서비스 종류	내 용
복지 서비스의 이용 도우미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조언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실 때의 이용 절차 도우미 서비스 등
일상적 금전 관리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금 입출금 도우미 서비스 집세 및 공공요금 등의 지불 도우미 서비스 등

(3) 성년 후견 제도

- 치매, 지적 장애, 정신 장애 등에 의해 판단 능력이 불충분하신 분에게 본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후원자(성년 후견인 등)를 가정재판소가 선택함으로써 본인을 법률적으로 지켜주는 제도입니다.
- 판단 능력이 불충분해진 후에 이용하는 ‘법정 후견 제도’와 판단 능력이 불충분해질 경우를 대비해 ‘누구에게’, ‘무엇을 도움받고자 하는지’ 등에 대하여 계약으로 정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는 ‘임의 후견 제도’가 있습니다.
- 신청하실 수 있는 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및 시정촌장(본인의 복지를 피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입니다.
- 상세사항은 시정촌, 오사카부 사회 복지 협의회, 시정촌 사회 복지 협의회, 지역 포괄 지원 센터, 장애인 기간상담지원 센터, 중핵 기관(권리옹호 지원의 지역 연계 네트워크의 중핵 기관), 본인이 거주 중인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재판소에 문의해 주십시오.

(4) 고령자 학대 방지

개호 보험법에서는 지역지원 사업에 의한 고령자 학대 방지 등의 권리 옹호 사업의 실시나 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인격 존중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학대방지법은 ‘양호자에 의한 고령자 학대’와 ‘요양 개호 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고령자 학대’로 나누어서 정의합니다. 고령자 학대를 발견한 경우는 시정촌에 상담·신고해 주십시오.

9. 심사청구

시정촌이 실시한 개호(지원) 대상 인정 및 개호 보험료에 관한 처분에 대해 불복하고 시정촌과 상담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처분의 취소를 위해 오사카부에 설치된 개호 보험 심사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호 보험 심의회에서는 시정촌이 실시한 처분이 법률, 조례에 비추어 위법 또는 부당한 부분이 없는지 여부를 심리한 후 재결합니다.

또한, 심사 청구는 처분이 내려진 것을 알게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해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오사카부 개호 보험 심사회 홈페이지

[오사카부 개호 보험 심사회](#)

[검색](#)



10. 장애인의 개호 보험 이용에 대하여

개호 보험 제도는 장애인 시책에 따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분을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인 분 및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의료 보험 가입자인 분은 개호 보험의 피보험자가 됩니다.

그 때문에 65세 이상의 고령 장애인 및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특정 질병자가 개호(지원) 대상 인정을 받아 개호 대상 또는 지원 대상 상태가 된 경우에는 개호 보험에서 개호 급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 사업에 대해서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함에 있어서 서비스 내용이나 기능으로부터 개호 보험 서비스에 상당하지 않는 장애 복지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 종합 지원법에 의한 서비스를 비롯해 각종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조합한 케어 플랜 등에 따라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케어 매니저, 시정촌, 지역 포괄 지역 센터로 문의하십시오.

또한, 2018년도부터 시정촌민세 비과세 세대 또는 생활 보호 세대의 구성원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는 개호 보험의 자기 부담에 대해 고액 장애 복지 서비스 등 급부비를 통해 상환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 중인 시정촌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11. 기타 고령자 복지 서비스 등

(1) 자택에서의 서비스

개호 보험 서비스와는 별도로 시정촌이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생활지원 서비스 등)가 있습니다. 그 실시 여부와 내용, 서비스 대상자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시정촌 고령자 복지 담당 창구 등에 문의해 주십시오.

※서비스에 따라서는 이용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개호 보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신 경우에도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처: 시정촌 고령자 복지 담당 창구

(2) 시설 서비스

A. 양호 노인 홈

자택 생활이 곤란하신 분을 시정촌의 조치에 따라 양호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입소자가 자립해 일상생활을 하고 사회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도 및 훈련, 기타 지원을 합니다.

대상자 ...원칙상 65 세 이상으로서 환경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자택 생활이 곤란하신 분
이용료 ...부담 능력에 따라 일정 비용의 부담이 있습니다.

문의처: 시정촌 고령자 복지 담당 창구

B. 저가 노인 홈

저렴한 금액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식사, 입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자 ...60 세 이상(부부인 경우, 어느 한 쪽이 60 세 이상)으로서 가정 환경, 주택 사정 등의 이유로 자택 생활이 곤란하신 분
이용료 ...부담 능력에 따라 감액됩니다.

직접 시설에 문의하십시오

C. 유료 노인 홈

식사와 개호 제공,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이용권 방식, 건물 임대차 방식, 종신 건물 임대차 방식이 있습니다.

대상자(개호 포함)...개호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도 시설에서 제공하는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를 이용하면서 해당 시설의 룸에서 생활을 계속하실 수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함.

대상자(주택형) ...개호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 입주자 본인의 선택에 따라 지역의 방문 개호 등의 개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해당 시설의 룸에서 생활을 계속하실 수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함.

이용료 ...계약으로 정해지며, 시설마다 다릅니다.

직접 시설에 문의하십시오

(3) 고령자 대상 주택

A. 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

주택으로써의 방 넓이나 설비, 장애물 제거 등의 하드면의 조건을 갖춤과 동시에 케어 전문가에 의한 안부 확인이나 생활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에 의해 고령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도도 부현, 정령시, 중핵시에 등록된 주택입니다.

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 정보 제공 시스템

문의처 : 오사카부 거주기획과 주택 시책 추진 그룹(TEL : 06-6210-9711)

B. 실버 하우스

고령자를 배려해 설계된 주택으로 고령자 2 인 세대 또는 독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영 주택입니다. 입주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문의처 : 부영 주택 : 각 지정 관리자·시영 주택 : 시의 주택 담당과

12. 상담 창구·정보 안내

A. 담당 케어 매니저(개호지원 전문인원)

본인의 케어 플랜을 작성한 케어 매니저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B. 이용하고 있는 사업자의 불평 상담 창구

본인이 이용하시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불평 상담 창구가 있으며, 책임자가 있으므로 편안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C. 시정촌 개호보험 담당 창구

개호보험에 관한 궁금하신 점, 고민, 불평 등은 시정촌의 개호 보험 담당 창구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D. 지역 포괄 지원 센터

지역의 고령자 본인 및 가족 등의 상담을 접수하는 종합적인 창구입니다. 시정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재지 및 연락처는 시정촌에 문의하십시오.

- 거주 중인 시정촌의 지역 포괄 지원 센터

홈페이지

E. 오사카부 국민건강보험단체 연합회 불평 상담 창구

개호보험 서비스에 관한 불평에 대하여 개호서비스 불평 처리위원회에 이의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오사카시 주오구 도키와초 1-3-8 주오도리 FN 빌딩 내 5F TEL : 06-6949-5418

홈페이지

F. 치매에 관한 상담창구

치매에 관한 상담은 시정촌의 지역포괄 지원센터 등에서 대응합니다.

홈페이지

G. 약년성 치매에 관한 정보

신경 쓰이는 증상, 걱정 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는 조기에 의료 기관에서 진단을 받으십시오.

홈페이지

H. 오사카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적정화 위원회 「복지 서비스 불평해결위원회」

복지 서비스에 관한 불평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 원조, 사업소에 대한 청취, 협의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도와 드립니다.

- 오사카시 주오구 나카데라 1-1-54 오사카 사회복지지도센터 1F TEL : 06-6191-3130

- 월~금요일 10:00~16:00(축제일·연말연시를 제외합니다.)

홈페이지

I. 소비자 생활에 관한 상담 및 불평 접수

- 소비자 핫라인 TEL : 188(국번 없음)

※거주하시는 시정촌 등의 소비자 생활 상담창구를 안내합니다.

- 오사카부 소비생활센터 TEL 06-6616-0888

홈페이지

J. 독립행정법인 복지의료기구(WAM)

홈페이지

해당 팸플릿의 홈페이지

- 해당 팸플릿의 전자 파일 및 내용 변경 등의 최신 정보를 게재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오사카부 개호 보험 제도 팸플릿](#)

[검색](#)



大阪府

오사카부 복지부 고령 개호실 2024년 7월 발행
우편번호 540-8570 오사카시 주오구 오테마에 2초메

TEL : 06-6941-0351